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 정의 및 기준 마련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5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 정의 및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호의4 및 제7조제4호 신설)	2
※ 참고1 [유사 입법례]	10
참고2 [국가유산 훈증제 및 방제법 연구]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특성·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 정의 및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호의4 및 제7조제4호 신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에 관한 기준을 국가유산청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및 제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보존처리제”란 국가유산의 부패나 변질을 예방하고 보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u>
2. ~ 17. (생략)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2.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에 관한 사항</u>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상 “살생물제”¹⁾는 ① 살생물물질, ② 살생물제품 및 ③ 살생물처리제품을 의미함.

①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뜻함.

② “살생물제품”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③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의미함.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²⁾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의 유효기간은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화학제품안전법」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같은 법 제18조³⁾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 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함)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한 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승인유예기간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즉, 원칙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신고를 하면 됨.

한편,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4)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

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거된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살생물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있으나, 각 호에 열거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됨.

이에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살생물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있음.⁵⁾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목재, 종이, 섬유와 같은 유기질 문화유산의 부패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은 기존살생물물질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승인유예 대상으로 지정되었음.⁶⁾ 이후 승인유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학

-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살생물제 목록은 ‘참고1’ 참조
- 6)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56	Ethylene oxide	75-21-8	1-가. 살균제	2023.12.31.

제품안전법」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산화에틸렌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은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동안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었음.⁷⁾

즉, 2025년 12월 31일까지 물질승인이나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화에틸렌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었고, 현재는 산화에틸렌에 대한 승인유예기간과 산화에틸렌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물질승인 또는 제품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문화유산의 재질·특성·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화학제품안전법」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511호, 2018. 3. 20.)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
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
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존처리제가 일반 화학제품 규제를 받지 않
도록 함으로써 국가유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
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 제5
조제1항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이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⁸⁾.

또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산화에틸렌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약제를 사용한 훈증 처리가 국가유산에 가장 적합하고, 이를 대
체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개발되지 않은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8) 박정의원 대표발의, 2025. 12. 9. 발의, 의안번호 제2215026호.

9)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508호. (2025. 1. 15. 발의, 2025.2.1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1

유사 입법례

●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살생물제 현황(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연번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관련법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2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
3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
4	수처리제(水處理劑)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5	단미사료(單味飼料), 보조사료(補助飼料)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6	처리물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
7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8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7호같은 법 제85조제1항
9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
10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11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제1호
12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

○ 연구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

○ 연구내용

(1) 훈증약제 연구

-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방제기술 개발 연구(2009년)

* 타 재료를 사용하는 약제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변색이 나타났으나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는 약제 2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

-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약제 평가기술 개발 및 인정기준 연구(2013년)

* 산화에틸렌은 금속 시험편에서 변색이 나타났으나 이는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발생한 변색이며 큰 차이가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

- 문화유산 훈증소독용 대체약제 관련 연구(2014년)

* 산화에틸렌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제 3종을 가지고 살생물력 및 재질 안정성 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 뛰어난 훈증소독 효과를 얻으면서 주요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

(2) 친환경 생물방제 연구

- 훈증소독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였으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저산소나 열처리 등 친환경 방제법은 일부 박물관 등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훈증소독을 대체하기는 어려움.

○ 연구결과

-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산화에틸렌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약제를 사용한 훈증처리가 국가유산에 가장 적합한 방제법으로 확인됨.

-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산화에틸렌 훈증이 불가피하며 약효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처리가 필요함.

- 훈증작업 시 작업자(관람객) 및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철저 필요